

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김종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6. 28.

발의자 : 김종희 · 김병욱 · 이찬열

손금주 · 최경환(평) · 송석준

김경진 · 박주민 · 심상정

김광수 · 장정숙 · 김삼화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.

그런데 전년도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·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·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추진계

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).

##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수립 및 시행에”를 “수립·시행, 추진실적의 제출·분석·평가 등에”로 한다.

⑤ 농촌진흥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농촌진흥청장은 제6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도별 추진실적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

다]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) ① ~ ④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4조(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농촌진흥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⑦ 농촌진흥청장은 제6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⑧ ----- -----수립·시행, 추진실적의 제출·분석·평가 등에-----.</u>
<u>&lt;신 설&gt;</u>	
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